



실험·실습심의위원회 규정

[제목개정 2013. 5. 1]

제정일	1983. 2. 1
개정일	2021. 4.15
개정차수	7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설치) 동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실험·실습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험·실습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실험·실습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3. 5. 1)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차·국장 및 각 학부(과)장 또는 학부(과) 추천교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장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2.13)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괄한다. (개정 2014. 1. 1, 2014.11. 1, 2021. 4.15)

③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운영과에서 담당하고, 소속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4.11. 1)

제 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실험·실습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
2. 실험·실습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성과평가 및 예산계획 심의에 관한사항
3. 실험·실습기자재 확충 도입에 따라 활용 증대를 위한 관리, 공동 활용, 관리전환 등에 관한 종합 조정
4. 실험·실습기자재의 공동구매 사양 결정
5. 기타 실험·실습 전반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3. 5 1]

제 4조 (회의) 회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,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5조 (자료요청 및 조사)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학부(과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6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